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적정청구관리시스템(FDS) 주요 유형 검출 현황 안내



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

신규 개설 기관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



■ 목적

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의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를 게시하여
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경향을 파악하여 적정 청구를 유도하고자 함.

■ 정의

신규 개설 기관이란? 최근 3년 이내에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
착오청구란? 청구 내용 등에 부적정이 의심되어 정밀 심사가 필요한 경우
고시 란?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※ 고시 게시위치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·자료실 > 법령자료실

■ 신규 개설 기관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

- 1) 종사자 해외출입국 착오 청구
- 2) 가정방문급여 시간 중복 제공 착오 청구
- 3)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오 청구

신규 개설 기관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



■ 종사자 해외출입국 착오 청구

고시 제51조(근무인원 수 산정방법) 제1항에 따라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하나, 종사자 해외출입국 기간 중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착오 청구 하는 경우

■ 가정방문급여 시간 중복 제공 착오 청구

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부터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청구하여야 하나, 요양보호사 A가 수급자 B, C에게 방문요양 시간을 중복하여 착오 청구 하는 경우

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착오 청구

고시 제23조(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)제3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음에도 급여를 제공하여 착오 청구 하는 경우(이 경우 160시간 중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한 시간은 제외)

감사합니다

